



보도	2025.11.11.(화) 조간	배포	2025.11.10.(월)		
담당부서	조사1국 조사총괄팀	책임자	국 장	권영발	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 장	김기복	(02-3145-5582)
	조사2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	류태열	(02-3145-5650)
		담당자	팀 장	진세동	(02-3145-5653)
	조사3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	장정훈	(02-3774-8570)
		담당자	팀 장	강지훈	(02-3774-8591)

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

-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·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
-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<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(단위: 명) >

구 분	2023년		2024년		2025.9월		계	
	임원	직원	임원	직원	임원	직원	임원	직원
코스피	11	3	13	3	13	1	37	7
코스닥	35	7	38	3	22	5	95	15
코넥스	6	3	0	0	0	0	6	3
합계	52	13	51	6	35	6	138	25

-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,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입니다.
- 금번 교육은 ①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**중소형사 중심**으로, ②조사경험이 풍부한 **조사원**이 **회사를 방문**하여, ③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**맞춤형 교육**을 실시한다는 점에서, **예방효과가 클 것**으로 기대합니다.
-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**위법행위**임을 인지하고, 내부통제 등 관리·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

1

상장사 임직원 대상 ‘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’ 실시

① 배경 및 그간 실시 경과

- 국내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고 일반투자자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
 -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
 - 상장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요 위반사례를 위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*을 실시하여 상장사들의 임직원 관리·감독활동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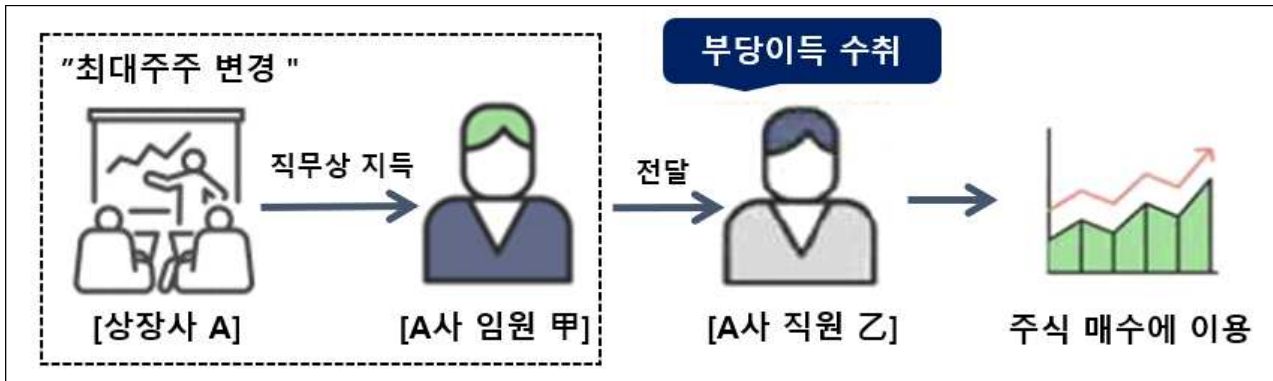
* '22년 18사 → '23년 13사 → '24년 10사 → '25년 15사(예정)

② '25년 실시계획

- **(대상)**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하여 상장사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(8월)하였으며,
 - 신청회사 중 과거 교육실시 여부,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여 15개사(코스피 6사, 코스닥 9사)를 선정
- **(방식)** 불공정거래 조사경험이 풍부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회사*를 방문하는 ‘찾아가는 교육’을 실시할 예정(11~12월)
 - * 서울 9사, 수도권 3사, 지방 3사
- **(내용)**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,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
 -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최근 강화된 제재내용*도 안내함으로써 상장사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

* 불공정거래 적발시 ①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병과, ②새로 도입된 행정제재(이용계좌 지급정지,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) 적극 부과 예정

① 미공개정보 이용 (호재성 정보 이용)



□ A사 임원 甲은 A사 재무·공시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동사 '최대주주의 경영권 양도 관련 양해각서 체결'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

- 甲은 동사 최대주주 변경시 시장 지배력 강화, 시너지 발생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,
- 동 정보 공개 전에 동사 재무·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乙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

□ 乙은 甲으로부터 얻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 실현

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4조) 혐의로 조치(甲·乙)

◆ 임직원은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로서,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

- 한편 '최대주주 변경' 정보는 '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'에 해당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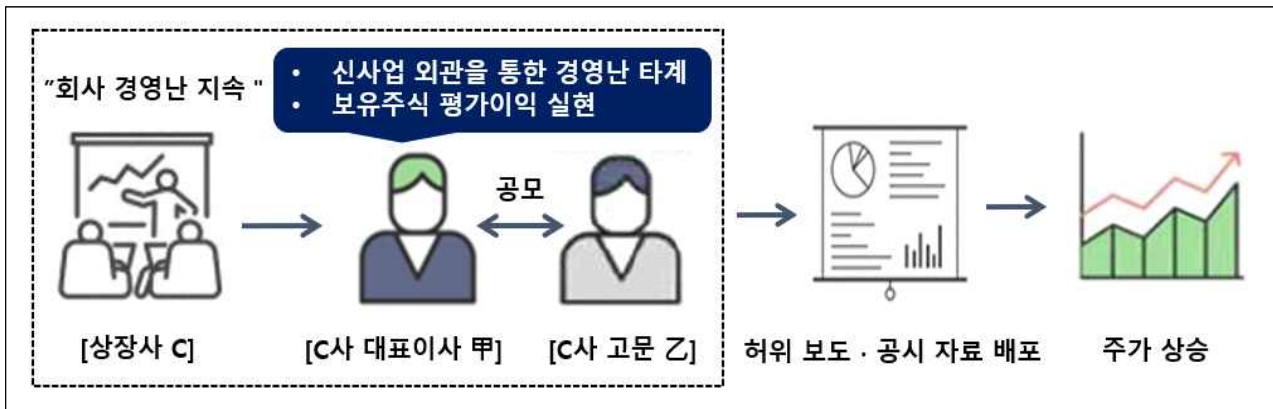
② 미공개정보 이용 (악재성 정보 이용)



- B사 임원(경영본부장) 甲은 재무회계팀으로부터 반기 재무제표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'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'이라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무상 지득
 - 甲은 동 정보가 반영된 반기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동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
 - 동사 직원 乙 역시 매주 개최되는 팀장급 회의에서 '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'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
 - 동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 회피
- 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4조) 혐의로 조치(甲·乙)

- ◆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매매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
 - 한편 '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' 정보는 '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'에 해당할 수 있음

③ 부정거래 (허위 공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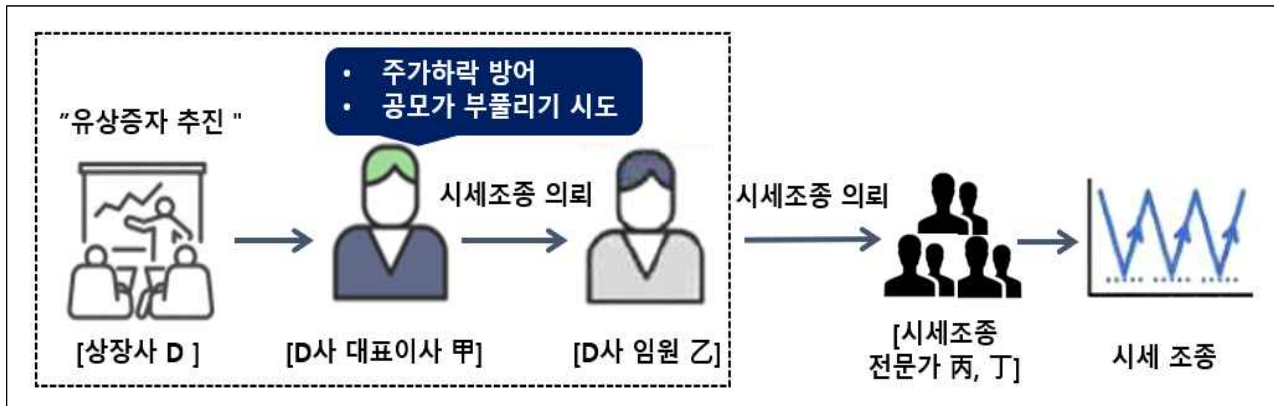
- C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甲은 동사 고문 乙과 공모하여 동사 경영난을 해소하고 C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범행
 - 甲은 C사의 주요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
 - 신규 사업 관련 제조시설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신사업 추진의 외관을 형성
 - C사 주가 급등으로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자, 해외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라 공시한 후
 -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다는 허위 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

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8조) 혐의로 조치(甲·乙)

◆ 신사업 진출 외관 형성 및 허위 공시 등은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회사 투자가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,

-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‘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(부정거래 행위)’에 해당할 수 있음

④ 시세조종 (시세고정)



□ D사 대표이사 甲은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조달 가능한 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아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

- D사 임원 乙에게 공모가 산정 기간 중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
- 乙은 시세조종 전력자인 丙, 丁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甲에게서 받은 시세조종 대가와 매수자금을 제공
- 丙, 丁은 공모가 산정기간 중 고가매수, 시·종가관여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주가하락을 방지

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6조) 혐의로 조치(甲·乙·丙·丁)

◆ 유리한 공모가 산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행위는 '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시세조종행위'에 해당

⑤ 대량보유 ·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



- E사 임원 甲은 기존 대주주 乙로부터 동사 주식을 양수하여 동사 주식을 5% 이상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고,
 - 이후 동사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보유비율이 1%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
 - 또한, 甲은 대량보유 보고와는 별도로 등기임원으로서 소유주식의 변동 상황 발생시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동사 주식을 수년간 반복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음

➡ 대량보유(자본시장법 제147조)·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(자본시장법 제173조) 혐의로 조치(甲)

- ◆ **(대량보유 보고)** 상장법인 주식 등을 5%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% 이상 변동 된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며,
- ◆ **(소유상황 보고)** 상장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해당 회사 주식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보고하고,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함
 -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유주식 보고를 누락한 경우 위반비율이 낮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